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3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63,768,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평화지오텍(주)(박종호) ② (주)태영건설(이재규)

나. 전화번호 : ① 031-744-3456 ② 031-910-6999

2. 명칭 : 사각형 보강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이중관 구조의 복합강관과 속경궤화형 쉘링제를 적용하는 동시가압 그라우팅 터널 보강 공법 (CSP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시공 시 터널 주변부에 가해지는 상재하중 및 이완하중을 분산, 경감시킴으로써 지반의 붕락을 억제하고 보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각형 스티프너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이중관 구조의 복합강관과 속경궤화형 쉘링제를 적용하여 동시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터널보강공법으로 사각형 스티프너 이중구조와 포켓팩커가 일체화된 개량형 복합강관에 의하여 강성을 증가시켰으며 칼슘알루미늄에이트계 무수축 속경궤화 쉘링제를 적용함으로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향상을 확보한 기술임.

<범위>

포켓팩커와 사각보강재가 일체화된 복합강관을 삽입하고 칼슘알루미늄이트계 무수축 속경결화형 쥘링제를 주입하여 동시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터널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79호

엑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켓투	제2020-29호	'20.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임팩트파트너스 주식회사	제2020-30호	'20.5.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성로 357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이엑셀러레이터	제2020-31호	'20.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43

●경찰청공고제2020-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의무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진단 결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을 범죄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한 운전 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점수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범칙금 부과 시 기한 내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려는 것임